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: 제2026-72호(2026. 8. 3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: 어선 계류시설(FRP부잔교 및 도교)
3. 점용·사용의 장소: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56-8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: 261m²(2026. 8. 4. ~ 2027. 8. 3.)
5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: 창원시장
 - 주 소: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(용호동)

2026. 8. 3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